ICT융합 품질인증 제도

인증비용 무료

정보통신융합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편의성·안정성·신뢰성·확장성 등에 관한 품질인증기준에 충족되는지 시험평가와 현장평가 등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

법적근거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품질인증)

대상분야

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기술과 서비스 분야

- 방송·콘텐츠
- 바이오·의료
- 지식·서비스
- 기계·건설
- 정보통신
- 화학
- 에너지·자원
- 물류·유통
- 국방·안전
- 전기·전자
- 소재

혜 택

- 조달청의 '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'에 따른 ICT융합 품질인증 제도가 포함되어 품질소명자료로 활용
- 중소기업벤처부의 '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'에 ICT융합 품질인증 제도가 포함되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가능
- 조달청 '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' 지정 시 기술 및 품질평가 면제

신청문의

• TTA 공공안전서비스단 ICT융합품질인증 담당자
(010-5111-1051, jackylin@tta.or.kr)

인증단계

STEP 01 인증신청 품질인증 신청 신청안 준비물, 신청서 개발제품설명서, 신청제품 등 인증대상여부 검토

STEP 02 평가기준 마련 평가기준 마련 평가범위 설정, 시험규격 작성 등 기술위원회 의결 시험규격 제정, 평가방안 도출

STEP 03 인증평가 시험평가 시험규격과의 적합여부 확인, 현장평가(ISO9001 등의 국제인증 대체 가능) 인증심의위원회 의결(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기준 만족여부 판단)

STEP 04 인증완료 및 관리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: 인증일자로부터 3년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품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, 자동 갱신 가능(1년 단위)



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
(031)724-0114, http://www.tta.or.kr